

신구조문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p>제2조 (용어의 정의)</p> <p>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p> <p>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p> <p>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u>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u> 말합니다.</p> <p>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u>저장된 정보를</u> 말합니다.</p>
<p>제3조 (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p> <p>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p> <p>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변경되는 약관에 따른 이용자의 이의제기시 "회사"는 통지사실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p> <p><신설></p>	<p>제3조 (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p> <p>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u>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u>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p> <p>③ <u>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u> <u>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약관의 중요내용을</u> <u>이용자에게 직접 설명</u> 2. <u>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u> <u>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u> <u>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u> <p>④ <u>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u> <u>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u> <u>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u> <u>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u></p>

<p><신설></p> <p><신설></p> <p>④ 이용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	<p>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p> <p>⑤ <u>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u></p> <p>⑥ <u>회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게시를 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p> <p>⑦ <u>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u></p>
<p>제4조 (이용시간)</p> <p>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가능한 즉시 사후 공지합니다.</p>	<p>제4조 (이용시간)</p> <p>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u>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등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u></p> <p>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u>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u></p>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p>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p> <p>①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p> <p>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p> <p>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 앙로248길 7-2, B동 광고원희캐슬 302호 - E-mail: ops@passgo.co.kr - 전화번호: 031-211-6990 	<p>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p> <p>① 회사는 <u>서비스 내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u>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p> <p>② 회사는 <u>이용자로부터</u>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았으나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p> <p>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04783)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83, 3층(성수동2가, 무신사캠퍼스 E1) - E-mail: paycs-q@musinsapayments.com - 전화번호: 070-7606-6641
<p>제6조 (거래지시의 철회)</p> <p>②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신설></p>	<p>제6조 (거래지시철회)</p> <p>②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9조,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③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p>

<p>제7조 (추심이체 출금동의)</p> <p>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p> <p>② 회사는 전 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p> <p>③ 이용자는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p> <p>제7조 (추심이체 출금동의)</p> <p>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u>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출금 동의 방식을</u> 제공합니다.</p> <p>② 회사는 전 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u>금융결제원 및</u>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p> <p>③ 이용자는 <u>자신의</u>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는 동의를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u></p>
<p><신설></p>	<p>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p> <p>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u>다만,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u></p>
<p>제8조 (오류의 정정 등)</p> <p>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p> <p>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p>	<p>제9조 (오류의 정정 등)</p> <p>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② <u>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u>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u>정정요</u></p>

<p>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p>	<p><u>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u> <u>이용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u>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p>
<p>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5조에 따릅니다.</p>	<p>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p>
<p>제10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p>	<p>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p>
<p>제11조 (회사의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p> <p>4. 전자금융거래시 보안강화를 위하여 회사가 제19조 제1항의 따른 확인 외에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가능한 즉시 사후 공지합니다.</p>	<p>제12조 (회사의 책임)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p> <p>4. <u>회사가 전자금융거래시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전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u></p> <p>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u>발생한 경우</u>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u>이 경우 회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u> 단,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u>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u></p>
<p>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u>회사의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u>에 대하여 <u>전자금융거래</u>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p>

<p>- E-mail: ops@passgo.co.kr - 연락처: 031-211-6990</p> <p>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니다.</p> <p>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u>소비자기본법</u>」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제14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제14조 (약관 외 준칙)	제15조 (약관 외 준칙)
제15조 (관할)	제16조 (관할)
제16조 (정의)	제17조(정의)
제17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종류)	제18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종류)
제18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19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19조 (접근매체의 관리).	<삭제>
<신설>	<p>제20조 (한도 등)</p> <p>회사 또는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 후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 안내문 또는 결제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신설> 이하 동일	<p>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p> <p>제21조 (정의)</p> <p>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 당시 이용자에게 고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유상으로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제휴사”라 함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말합니다. 회사는 홈페이지에 제휴사 현황을 게시합니다.

4. “선불충전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한 금액으로써 유상으로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및 적립)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신용카드,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하거나, 제휴사에서의 활동으로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 별로 지정된 금액을 충전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충전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지불수단 별 충전 및 적립 정책을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23조 (선불충전금의 한도)

① 회사가 정한 선불충전금의 한도는 실지명의당 최고 200만원으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한도를 50만원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선불충전금 한도 정책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휴사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재화 등의 구매 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과 동일한 유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5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무상으로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제휴사의 무상포인트가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제휴사의 무상포인트 제공 정책 또는 해당 이벤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며,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회사의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서비스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적립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③ 회원은 제휴사의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에서 소멸 예정인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회원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취소 및 환급)

① 이용자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충전) 취

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인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무상으로 지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인출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상환 잔액을 전부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상품권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권면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

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나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2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 통지하고,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 결제정보, 기타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 충전 및 이용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또는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6.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불법할인 등 부정한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7. 위의 각 호에 대한 의심이 있어 회사가

1주의 기한을 정해 이용자에게 소명 또는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용자가 기한 내에 적절한 소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용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를 통하여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소명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29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30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29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p>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musinsapayments.com/)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 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p>
<p>부칙 본 약관은 <u>2023년 4월 25일</u>부터 적용됩니다.</p>	<p>부칙 본 약관은 <u>2024년 11월 29일</u>부터 적용됩니다.</p>